

국외 산업안전보건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국외출장 계획

1. 목 적

- 중국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대표적인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상호 최신 이슈 공유 및 향후 관심분야 전문가 교류 등 협력체제 구축(협력협정 체결 등) 기반 마련
- 안전생산과학연구원(CASST), 보건부 산업보건국(DOH)*, 산업보건·화학물질중독통제연구원(NIOHP)
 - * 2018년 중국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(SAWS)의 확대개편으로 응급관리부(MEM) 설립 이후 SAWS로 부터 산업보건 업무를 이관 받아 전담하는 정부부처
 - ※ 안전생산과학연구원(CASST) 기관현황 및 교류현황 : 【덧붙임 1】
 - ※ 보건부 산업보건국(DOH) 현황 : 【덧붙임 2】
 - ※ 산업보건·화학물질중독통제연구원(NIOHP) 현황 : 【덧붙임 3】

2. 출장개요

- 출장기간 : 2019. 7. 15(월) ~ 7. 19(금) 【4박 5일】
- 출 장 지 : 중국(북경)
- 출 장 자 : 이사장, 연구원장, 국제협력센터 권종규 소장, 차중철 차장

3. 주요일정

일 시	수행내용	비 고
2019. 7. 15.(월)	○ 출 국 (인천 → 북경) ○ 베이징 시립 노동보호연구원(BMILP) - 연구원 현황, 연구원 주요 추진사업(연구내용), 연구원의 안전보건 관련 역할 등	
2019. 7. 16.(화)	○ 안전생산과학연구원(CASST) - 연구원 주요 연구내용, 연구원 사업장 기술 지원 업무 내용 등	
2019. 7. 17.(수)	○ 보건부 산업보건국(DOH) - 산업보건 사업추진 체계,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공유	
2019. 7. 18.(목)	○ 산업보건·화학물질중독통제연구원(NIOHP) - 주요 현안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	
2019. 7. 19.(금)	○ 귀 국 (북경 → 인천)	

※ 방문기관 사정에 따라 방문기관 변경 등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.

4. 중점 수행사항

○ 베이징시립노동보호연구원(BMILP)

- 일 시 : 2019. 7. 15(월) 16:00~18:00
- 장 소 : 베이징시립노동보호연구원내 회의장
- 참 석 자 : 공단(이사장 등 4명), BMILP(Dr. Zhang Bin 원장 등 4명)
- 주요내용 : 연구원 현황, 연구원 주요 추진사업(주요 연구내용), 연구원의 안전보건 관련 역할

○ 안전생산과학연구원(CASST)

- 일 시 : 2019. 7. 16(화) 10:00~15:00
- 장 소 : 안전생산과학연구원(CASST)내 회의장
- 참 석 자 : 공단(이사장 등 4명), CASST(Dr. Zhang Xingkai 원장 등 4명)
- 주요내용 : SAWS 주요 위임업무, 연구원 주요 연구내용, 연구원의 사업장 기술지원업무 등

○ 보건부 산업보건국(DOH)

- 일 시 : 2019. 7. 17(수) 10:00~15:00
- 장 소 : 보건부 산업보건국내 회의장
- 참 석 자 : 공단(이사장 등 4명), DOH(Dr. ZongZhi Wu 국장 등 4명)
- 주요내용 : 중국의 산업보건 정책 및 이행, 산업보건 사업추진 체계, 주요이슈 및 대응방안 등

○ 산업보건·화학물질중독통제연구원(NIOHP)

- 일 시 : 2019. 7. 18(목) 10:00~15:00
- 장 소 : 연구원내 회의장
- 참 석 자 : 공단(이사장 등 4명), NIOHP(Dr. Xin Sun 원장 등 4명)
- 주요내용 : 센터 주요사업 및 중국의 화학물질 중독 발생현황, 양 기관 관심분야 전문가 및 자료 교환 등 협력방안 논의

5. 행정사항

- 동 출장은 2019년도 국제협력센터 사업계획 중 「국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중 안전보건 전문기관과의 교류 등을 통한 재해예방 역량 강화」 사업으로 추진
- 여비규칙 제23조(여비의 조정)에 따라 동행한 상급자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급 적용
 - ※ 임원 수행 등을 위해 동일 목적 및 동행하여 사업을 수행하므로 상급자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급을 적용
- 국외출장을 위한 국내운임은 소속부서 국내여비로 처리
 - 울산↔인천공항 이동 운임 및 국내 숙박비는 국내여비 기준으로 지급
- 국외유관기관 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「공직자 선물신고제도」에 따라 처리
 - ※ 선물신고안내문 : 【덧붙임 4】

중국 안전생산과학연구원(CASST)

(CASST : China Academy of Safety Science and Technology)

1 . 설립년도 : 1980년

※ Municipal Institute of Labor Protection of Safety Bureau of Labor에서 사명 변경

2 . 기관성격

- 중국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(SAW) 산하 비영리 연구기관

3 . 인원 : 400여명

- 박사 : 72명, 석사 : 114명, 전문 기술인력 : 130명

4 . 주요업무

- 안전과학, 법 및 기준, 규정 및 정책 연구
 - 산업안전, 산업보건, 광산안전, 유해화학물질안전, 공공안전, 교통안전
- 사업장 안전관련 핵심 기술 연구 개발
 - 사고예방 및 안전공학기술 연구, 중대산업사고 시뮬레이션 및 분석, 비상대응 기술, 작업장 산업보건 모니터링 및 평가 기술 등
- 중국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(SAWS) 위임 업무
 - 안전평가보고서 검토, 기술자격기준 검토 및 공인 안전기술자 등록관리, 보호구 안전마크 관리
- 작업안전 관련 지방정부 및 기업 기술지원
 - 안전평가, 관리체계 검토 및 인증, 안전작업기준 검토 및 평가, 안전 작업 정책 자문, 안전보건교육 등 기술지원

5 . 연락처

- Anquan Plaza No. 1103 Room, No.32 Beiyuan Road, Chaoyang District, Beijing, P.R. China, Tel : 86-10-8491-1263, Cell : 86-13331098197 (Vice Director Zhang Yingzhe)

【덧붙임 2】

중국 보건부 산업보건국(DOH)

(DOH :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)

1 . 기관성격

○ 중국 산업보건 관련 정책 수립 및 이행 총괄

※ 중국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응급관리부로 통합되면서 산업보건에 관한 총괄 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

2 . 조직 : 보건부내 총 23국 중 산업보건 전담 조직

※ 산업보건 업무 총괄 국장 : Dr. Zongzhi Wu (Director General)

3 . 주요기능

○ 산업보건 관련 정책 수립 · 이행

4 . 주요업무

○ 산업보건 및 방사선 안전 관련 정책 수립 및 이행

○ 주요 직업병 감시 및 조사

○ 산업보건 위험성 평가 및 산업인력 관리

○ 직업병 예방업무 조정 등

5 . 연락처

○ 14 Zhichun Road, Haidian District, Beijing 100191

Tel : 86-10-6203-0951, Cell : 13901314613, E-mail :

chinahealthgov@163.com, Wuzongzhi@vip.sina.com

【덧붙임 3】

중국 산업보건 및 독성물질 통제연구소(NIOHP)

(NIOHP :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and Poison Control)

1 . 설립년도 : 1954년

※ 설립당시 기관명은 노동보건연구원(Labor Health Institute)이었으며, 1981년에
현 기관명칭으로 변경

2 . 기관성격

○ 중앙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최초의 산업보건 및 직업병 통제·예방
센터로 세계보건기구(WHO) 협력센터로 활동 중

3 . 조직(인원) : 10부(150명)

○ 역학조사 및 위험성 평가부, 물리·화학적 위험성 평가부, 산업보건 및 인간
공학부, 여성 노동자보건부, 산업보건 증진 및 직업스트레스부, 직업병 감시
및 정책연구부, 산업보건기준 연구부, 직업성 호흡기질환 연구부 등

4 . 주요기능

○ 산업보건 및 직업병 관련 연구 업무 수행

5 . 주요업무

- 산업보건 및 직업병 관련 연구
- 진폐 예방 및 치료기법 개발, 살충제 중독 예방, 직업성 중독 예방
- 산업보건 및 직업병 관련 기준 연구
- 산업보건 감시 등

6 . 연락처

○ 29 Nanwei Road, Xicheng District, Beijing 10050, P.R.China
Tel : 86-10-83132399, Fax : 86-10-83132573

【덧붙임 4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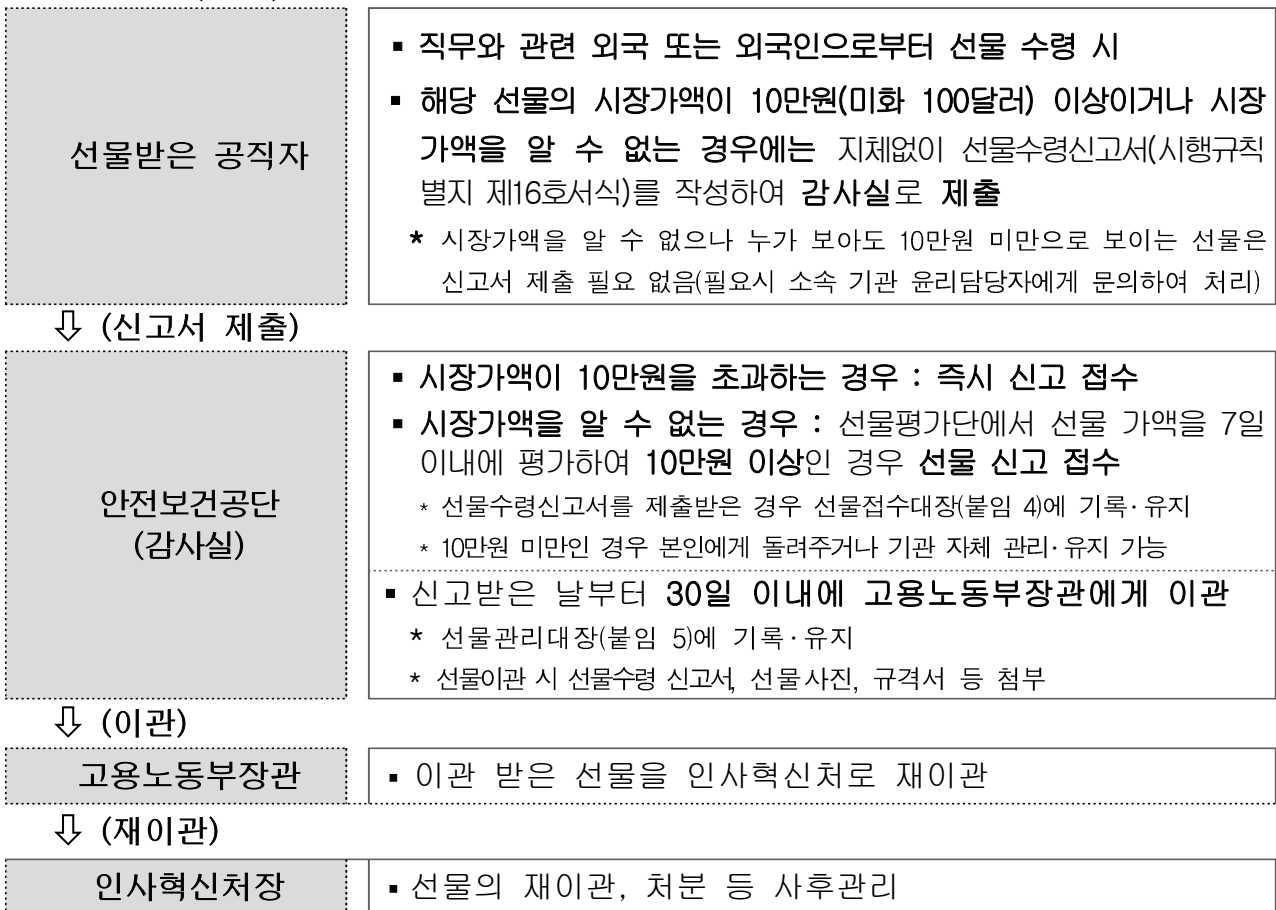
선물신고 안내문

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·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제도개요

- 근 거 : 공직자윤리법 제15조~제16조, 동법시행령 제28조~제30조
- 신고의무자 :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(가족포함)
- 대상 선물 :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(단체포함)으로부터 받은 선물

□ 신고요령(절차)



□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

-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